

灌腸에 대하여

洪炳旭

灌腸이란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肛門을 통하여 灌腸液을 注入함으로써 腸內에 蓄積되어 있는 內容物을 迅速히 排泄시킴을 目的으로 施行되는 臨床處置를 말합니다. 이 灌腸處置는 日常病院에서 자주 施行되는 臨狀藏處임에도 不拘하고 이處置에 對한 確固한 理論이나 明確한 標準을 把握치 못하고 계시는듯한 感이 있어서 이번機會를 통하여 여러분과 같이 再考할 時間을 가지고져 하는 바입니다.

(1) 灌腸의 適應症

- (a) 直腸檢査의 前處置
- (b) 便秘症
- (c) 高熱疾患에 있어서 腸內容의 腐敗로 因한 肝의 侵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d. 誘導療法의 한 方法으로

① 高熱에 對한 解熱方法으로서의 冷水灌腸

以上과 같이 灌腸은 여러모로 利用됩니다. 더구나 症狀表示가 能한 豚의 食慾不進, 倦怠, 痙攣等에 對하여는 이 灌腸과 硫酸下劑의 投與로 70%의 經過改善을 招來하는等 適切히 灌腸을 利用하시면 起死回生の 妨方이 되는 것입니다.

(2) 灌腸液의 選擇

灌腸處置에 있어서 가장問題는 어떠한 灌腸液을 選擇할것인가 하는 點이 重要視될것입니다. 灌腸液의 選擇에 있어서 우리가 아려야 할點은 腸內容이 어떻게 肛門으로 排出되느냐 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便通이란것은 어떠한 作用으로 因해서 이러한 現象인가를 아셔야 한다는 點입니다.

勿論 便通이란것은 여러가지 自律神經의 複雜한

支配 밑에 이러나지마는 그런 複雜한 機轉은 제쳐놓고 우리臨狀家는 下記의 三大條件이 다같이 具備되었을 境遇에만 便通이 일어날수있다는 點만은 記憶하시야 하겠읍니다. 즉

- (a) 腸運動 (b) 腸內內容物의 流動性 (c) 排便反射

以上 세가지 條件이 具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以上 세가지 條件中 한가지 條件만이라도 缺乏되면 便通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便秘症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말해서 以上세가지 條件만 具備시켜 주면 어느때이라도 便通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다면 灌腸液의 選擇問題는 여기서 自然히 解決을 보게되었다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三大條件中 缺乏된 條件을 充當시킬수 있는 條件의 性質을 가진 灌腸液을 選擇하시면 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目的에서 우리는

- a. 10%구리세링液 30~120cc(小動物)
- b. 5% 비누液 5~10L (大動物) 500~1,000cc(中) 50~100cc(小)
- c. 1% 食鹽水 5~10L(大動物)

이러한 灌腸液이 앞서 말씀드린 條件에 適合한 것이 타하여 우리先輩들이 以前부터 많이 使用되어온 것을 우리들을 잘알고 있습니다.

저의들은 排便三大條件에 加一層 充足하게 할目的으로 以上 말씀드린 灌腸에다 1%程度의 重炭酸曹達과 피麻子油를 混合하여 使用합니다. 이런 加味灌腸液의 使用는 灌腸을 加一層 確實性있게 합니다. 그리고 灌腸時의 直腸粘膜損傷으로해서 일어나는 第二次의 感染을 防止하는 意味에서 若干의 구레졸비누液 애크리후라빈 마큐로르 롬등의 消毒藥을 添加해서 使用할 必要性이 있다는 點에도 留意하시야 하겠읍니다. (筆者 서울大獸醫大教授)

이와 같이 進行되던 講習會에서는 各道獸醫師會에서 추천되어 選定된 有功者의 表彰式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名譽의 表彰을 받은분을 紹介하면

서울特別市	金	正	煥
京畿道	尹	成	奎
忠清南道	柳	桂	馨
忠清北道	金	知	律
全羅南道	金	在	幸
全羅北道	申	東	斗
慶尙北道	金	燦	五
江原道	趙	昊	默

以上 諸氏이며 이어서 始作된 座談會에서는 活潑한 質疑과 그리고 建議等의 進行을 보았다. 이는 別紙 座談會記事를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檀紀四二九三年五月十六日

서울特別市獸醫師會長 趙 怡 淵

農林部長官 貴下
서울特別市長

狂犬病豫防注射實施計劃에 對한是正策建議에 關한件來五月二十일부터 五日間에 걸쳐 貴市에서 實施計劃한首題의 件을慎重檢討한結果 그計劃에 不備 疎忽點이 不少하여 下記와같은 理由를列舉 是正策을 建議하오니 萬遺漏없도록 善處하여주시를 仰望하나이다.

記

- 一. 總五十個所程度의 開業獸醫師로하여금 五日間六萬頭에 對한 生毒豫防注射實施는 到底히 不可能함
(가) 生毒實施有効時間은 約五時間程度로 推算함
(나) 一人一頭 所要되는時間 約五分鐘
(다) 故로 一人當 一日間實施可能頭數 六十頭
- 二. 前項 計算에 依하여 總動員된 開業獸醫師가 五日間에 實施頭數는 約一萬五千頭이므로 殘餘 約四萬五千頭分의 豫防液은 無効가되어 國家에 莫大한 損失을 招來할 憂慮가있음
- 三. 本豫防注射液은 生毒인 關係로 技術的인 處理와 危險性을 內包한勞力이 必要할뿐만 아니라 保管 및 運搬에 冷凍機를 不得已使用케 되므로 不少한 經費가 所要되오니 所定의 開業獸醫師 醫療報酬規定에 依據한 手數料를 徵收하여야하겠음

「回答」

農畜第五二五號

단기四二九三年五月十九日

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獸醫師會長 貴下

狂犬病豫防注射實施에 關한件

五月十六日字建議하신 머리의건에 關하여 別紙寫書와 같이 서울特別市長에게 指示하였으니 諒知하시기바라나이다.

農畜第五二五號

단기四二九三年五月十九日

農林部長官

서울特別市長 貴下

狂犬病豫防注射實施에 關한件

머리의件에 關하여 서울特別獸醫師會長으로부터 別지 사서와 如한 建議가有하오니 다음에 依하여 實施하시기 務望함

다 음

- 一. 既定計劃에 依하여 一齊豫防注射實施期間中 所定의 實施手當(實施旅費및賃金)및 所要資材를 支給하였을때에는 同實施手數料를 徵收할수없음
- 二. 手當(實施旅費및賃金)만을 支給하고 所要資材를 支給하지 않을경우는 同豫防注射實施에 消耗되는 實費만을 酬價規定에 依하여 徵收할수있으나 이는 地方 長官이 認可하여야함
- 三. 實施期間에 對하여는 藥品의 需給量에 비추어 變更 實施할것

檀紀四二九三年七月二〇日

서울特別市獸醫師會長 趙 怡 淵

서울特別市長 貴下

家畜傳染豫防注射等實施에 關한年數料 徵收의件

首題의件 「농축제五二五호」에 依하여 左記와 如히 手數料를 徵收코저 하오니 認可하여주시를 申請하나이나

記

- 一. 家禽의 注射接種檢索 首當十圓以上三十圓以下
- 二. 家畜의 注射檢索頭當 200圓以上 500圓以下

市産農第二八〇五號

단기四二九三年七月二十一日

서울特別市長직무대리 부시장 정종철

서울特別市獸醫師會長 貴下

家畜防疫事業實施에 對한質疑의件

首題의件 當面한 가축방역사업완수에 혼선을 초래케 될 우려가유하여 거7月11日字 농림부장관 앞으로 질의한바 別지통첩과여히 회시가 유하오니 참작하시와 향후 加축방역 사업에만 유무없기를 기하여주시 압기요망하나이나.

「別紙」

「質疑一」 對號通牒中第一項의 既定計劃에 依한 一齊 豫防疫注射라함은 狂犬病豫防注射만을 指示한것인

지 豫防注射을 包含한것인지그與否

「答」 一齊豫防注射라함은 農林部長官 또는 地方長官이 行政措置로서 家畜傳染病豫防上必要하다고認定할때一定한期日을 定하여實施하는것을말하며 當該通牒은 狂犬病에 關한것이나 貴市各處 一齊防疫에 準用할수있음

「質疑二」 同條項所要手當및資材를 支給하여야 한다는데 그所要手當額의 限界와 資材의 量

「答」 所要手當은 公獸醫에對하여는 市條例에定한바에依하여 出張費를支給할것이며 開業 獸醫에對하여 出張費를 支給할것이며 開業獸醫에對하여는 現行酬價規定을參酌하여 適當한金額의 日當을支給할것이며 所要資料의量은 實地消費를말한것임

「質疑三」 通牒中酬價規程에 依한 實費徵收云云은 公獸醫도該當이되는지 그與否

「答」 公獸醫도 一般酬價規程에 依한實費徵收는 無妨하다고思料됨

但 一齊豫防注射實施期間中 地方長官이 獸醫師法第20條 第21條 및 第22條에依하여 出張費와 所要資料를 支給하고 出張을命하였을때에는 이를 徵收할수없음

「質疑四」 所要資材와手當을 支給하였을때 公開業獸醫師가 防疫業務를拒否한境遇 그 對策과 措置方法

「答」 公獸醫는 獸醫師法第15條 第20條 및 第21條의 義務履行의 拒否임으로 正當한 理由없을때에는 必要에 따라 그解免과獸醫師法 第4條 第2項에 該當되는 行政措置를 取할수있는것임
開業獸醫에 對하여는 現行酬價規定에 依한 報酬를支給하였음에도不拘하고 正當한理由없이 이를拒否할境遇에는 獸醫師法 第15條의義務履行의違反이므로 同法 第4條 第2項에 該當되는 行政措置를 取할수있음

「質疑五」 對號二項中酬價規定에 依한 實費를 받을수 있으나 地方長官이 認可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 國家事業을 一般養畜家에서 費用을받아서 좋은것인지 貴部의高見如何

또 地方長官이 認可하여야된다고하는데 地方長官이 이를認可할수있는 法的根據如何

「答」 畜産業의發展을 圖謀하는 行政措置로서 過去에는 家畜防疫費는國庫 또는 地方費에서 全擔하여왔으나 政府와地方自治團體의 財政形便이 逼迫하여지므로 因하여 官에서 그所要經費의 全擔이 不可能한 現實情에비추어 不得已 그不足額은 畜產協同組合의 還元事業으로써 捻出 하거나 또는 養畜家에게 그實費만을 負擔케 하거나 또는 養畜家에게 二實費만을 負擔케 하는것이나 養畜者에게 過重한負擔을 避하기爲하여 그負擔額의 適正을 地方長官이 檢討할機會를 가지기爲하여 地方長官의 認可를 받도록한것이다.

韓國馬事會任員發令

오래동안 空席이었던 馬事會會長을비롯한 各任員이 農林部長官에 依하여 11月28日字로 다음과같이 任

命發令되었다.

會 長	李 載 沅
副 會 長	金 熙 燾
常 任 理 事	鄭 喆 喆

[23頁에서]

免疫을 獲得케 하였다. 大略 三分之一의 犢은 어느 程度의 免疫을 얻었고 二乃至三頭는 完全히 感受性이 있었다.

鷄胎兒에서 繁殖시킨 牛乳頭腫病原體는 犢에 對하여 感染性이알고 免疫能力이 없었다. 二回の 實驗으로 60日疔 보답 120日疔에 病原體가 더 濃縮되어 있는것 같이 보였다. 牛疔의 上皮와 結合組織內에 乳頭腫病原體가 發見되었다.

牛疔의 眞皮에 있는 結合組織과 馬의 皮膚에서 牛疔病毒에 起因되어 生起인 肉腫의 結合組織은 犢에 疔을 發生시키는 病毒이 있었다. 感染된 結合組織을 接種한 犢은 牛乳頭腫의 病原體에 對해서 感受性이 있었다.

[C. Olson, D. Segre, and L. V. Skidmore, Further Observations on Immunity to Bovine Cutaneous Papillomatosis. Am. J. Vet., Ret. 21(March, 1960) :

§. 鹽漬肉와 生肉에 있어서의 口蹄炎病毒의 生存

口蹄炎病毒 A 119型을 接種한後 毒血症이 일어나고 二次의 病巢가 나타날때 實驗牛는 屠殺되었다. 感染된 屍體로 부터 病理解剖學的으로 病巢가 있는 組織材料를 가지고 37頭의 實驗群牛에 實驗을 實施하였다. 筋肉, 血液, 淋巴結節로 된研究材料를 新鮮한 狀態에서 實驗을 하고 익힘(ripening) (4°C에 72時間 동안 貯藏)다음 또는 나무통에 1°C에서 16日, 30日, 그리고 50日間貯藏한 後에 實施하였다. 30日과 50日貯藏된 研究材料에는 鹽漬肉(익힘(ripening)한것과 鹽漬된것)및 익힘(ripening)것과 鹽漬하지 않은 食肉이 包含되어 있었다. 傳染性病毒은 一例를 除外하고 모—는 新鮮材料, 익힌 血液과 淋巴結節 그리고 鹽漬 또는 鹽漬되어 있지 않은 淋巴結節에서 證明할 수 있었다. 이러한 鹽漬은 病毒을 非動化 할수 없었다. 4°C에서 貯藏된 屍體에 있어서 肋骨骨髓는 病毒을 14日, 60日, 73日間 保持하였고 淋巴結節, 血液, 筋肉은 60日間 病毒을 가지고 있었다. 익히는(ripening)동안 생기는 乳酸과 다른 化學的變化가 筋肉內에서 病毒을 非動化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는 淋巴結節, 큰血塊 또는 骨髓內에 있어서는 病毒에 認知할만한 影響을 주지 못하였다.

冷藏된 屍體에서 얻은 筋肉의 切開面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表面으로부터 深部に 向할수록 酸性이 높아진다는것과 또한 冷却度와 一致한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었다. 口蹄炎病毒에 汚染된 動物로 부터 얻은 食肉은 病毒이 어떠한 組織에 있어서 慣例上 生存하므로 익힘(ripening), 뼈추리기(boning), 鹽漬 또는 貯藏하는 一般商業的인 處置에 依하여 病毒을 除去할수없다는 結論을 얻었다.

法 規

檀紀4291年 5月14日字 農林部告示 第307號海外託送獸醫藥品認定取扱要領을 家畜家禽專用醫藥品等取扱規則 第14條의 二의 規定에 依하여 다음과같이 改定한다.

檀紀4293年11月15日

農林部長官 朴 濟 煥

다 음

商品見本 및 臨床試驗用獸醫藥品承認要領

一. 承認限界

1. 商品見本用

商品見本用(試供品包含)으로 外國에서 輸出하는 獸醫藥品은 每個當 見本 또는 非賣品標示가 貼付되어 있어야 하며 그包裝이 一般包裝單位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見本으로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品目과 包裝에 限하여 二百個以內로 한다.

2. 臨床試驗用

臨床試驗用으로 輸入하는 獸醫藥品은 供給者의 臨床試驗用標示가 貼付되어 있어야 하며 國內家畜病院開設者와 研究機關(獸醫關係學校包含)을 受取人으로서 新製劑로서 臨床試驗用으로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品目에 限하여 患畜100頭(家禽에 있어서는 1,000首)一回治癒에 所要되는 數量以內로 한다.

3. 前 各項中 當部獸醫藥品需給計劃上 禁止되어 있는 品目은 이를 認定하지 않는다.

二. 承認節次

商品見本 또는 臨床試驗用獸醫藥品을 輸入하고자 하는者는 別紙書式第一號에 依한 申請書二通에 다음 書類를 添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品名 規格 數量 및 主成分의 含量
2. 使用量 使用方法 및 使用上의 必要한 注意事項
3. 使用目的
4. 覺書(別紙書式第二號)
5. 臨床試驗에 있어서는 臨床試驗計劃書(別紙書式第三號)

(別紙書式第一號)

商品見本用(臨床試驗用)獸醫藥品輸入承認申請書

一. 品名, 規格, 數量 및 主成分

品名	規格	單位	數量	主成分의 含量	製造者名	適 應 症

- 二. 發送(寄贈)者住所
- 三. 使用量 使用法 및 使用上의 必要한 注意事項(別添)
- 四. 使用目的
右와 如히 商品見本用(臨床試驗用)獸醫藥品을 輸入코져 家畜家禽專用醫藥品等取扱規則第14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關係書類添付 申請하오니 承認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檀紀429 年 月 日

申請人住所(機關名)

代表者名 印

農林部長官貴下

(別紙書式第二號)

覺 書

今般 承認申請하는 商品見本用(臨床試驗用)獸醫藥品을 引受한後 現品은 絶對로 販賣치않을것이며 所定目的에 만 使用할것을 誓約하오며 違反時에는 如何한 行政措置도 甘受하겟아옵기 이에 覺書를 提出하나이다.

檀紀 年 月 日

申請人住所(機關名)

代表者名 印

農林部長官貴下

(別紙書式第三號)

臨床試驗計劃書

供試動物名	獸醫藥品名	一回使用量	投與回數	使用豫定量	試驗目的	備考

右와 如히 無償으로 臨床試驗을 實施코져 計劃를 提出하나이다.

檀紀 年 月 日

家畜病院(研究機關)名

代表者名 印

農林部長官貴下